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헌민 · 박강산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의원입니다.

-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응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
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
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전국
16만 8,645명으로 전체 학생의 3.2%를 차지하는 등 지난
10년간 우리나라 초·중·고 전체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
불구하고 다문화 학생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다문화 학생이란 친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 가

정의 학생이나,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 가정 자녀를 뜻합니다.

- 이에 개정안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돕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.
- 구체적으로,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목적에 다문화 학생의 사회적응 도모를 명시하고,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학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